

## 23일부터 알코올도수 80% 미만인 수입주류 관세 150% 인상

인도네시아 정부는 23일부터 수입주류에 대한 관세를 기존의 150% 인상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. 이번 수입주류의 관세 인상정책은 ‘수입품에 관한 세금 부과 및 분류법 관련 재무부 장관령 2011년 제11호’의 개정령인 ‘2015년 제10호’에 근거한다. 밤방 브로조노고로 재무장관은 지난 8일 이미 이 같은 내용의 개정령의 공포를 승인했으며, 하루 뒤에는 야손나 라올리 법무인권부 장관의 승인 역시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다. 재무부는 “지난 9일 야손나 법무인권 장관의 승인이 완료된 뒤 14일이 지난 23일부터 시행령은 효력을 갖는다”고 같은 날 재무부 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표했다. 이번에 새롭게 시행되는 재무부 장관령을 기준으로 수입주류는 종류별로 기존의 최소 5%에서 최대 150%까지 관세가 인상된다. 알코올도수 80% 미만의 수입주류는 모두 150%를 적용한다. 즉, 소주를 비롯하여 브랜디, 위스키, 럼, 진, 아락 등 대부분이 그 대상이 되는 것이다. 일각에서는 “현재도 충분히 높은 관세를 적용하고 있는 것도 모자라 전체 수입주류의 90% 이상에 달하는 알코올도수 80% 미만 수입주류에 기존의 1.5배나 되는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과하다”는 입장을 내비쳤다. 한편 이 같은 소식을 들은 현지거주 외국인들은 “어처구니없는 발상”이라며 터무니없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고 현지언론은 전했다.

### □ 시사점

지난 4월, 조코위 정부가 주류 관련 인도네시아 무역부 장관령 2015년 제 6호에 근거하여 미니마켓 및 편의점에서 알코올 함유 5%이하 주류 판매를 공식적으로 금지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번 수입주류 관세 인상 또한 강행하였다. 이처럼 무슬림이 전체 인구의 85% 이상을 차지하는 인도네시아에서 특히 주류 관련 규제는 상대적으로 엄격하며, 이러한 정부의 조치에 다수의 정당들이 지지하고 있는 상태이다. 앞으로 주류품목에 대한 규제가 계속될 것으로 보이며, 관련 수출입 업체 및 유통업체의 수입 및 판매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.